

**- 제1차, 2021~2025 -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

2020. 11

국 방 부

< 목 차 >

I. 기본계획 수립 개요	1
1. 법적근거	2
2. 계획의 성격	2
3. 계획의 범위	3
4. 계획의 주요내용	3
5. 추진경위	3
II.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현황	4
1. 군용비행장 현황	5
2. 군사격장 현황	6
III.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기본계획	7
1.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8
2. 소음 저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9
※ 세부 목차는 다음 페이지 참조	
3. 소음피해 보상 방안	34
4. 재원조달 방안	39
IV. 추진 로드맵	43

※ 소음 저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Ⅲ-2-가. 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9
1)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기준 마련 및 운용	9
2) 주민 소음피해 보상업무 처리지침 제정 및 지자체 배포	10
3) 자동소음측정망 데이터 표준화 및 운용 체계 마련	11
4) 보상금 지급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추진	12
Ⅲ-2-나. 소음의 실태 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13
1)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13
2) 소음의 상시적 관리를 위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16
3)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및 관리	17
4) 군소음포털 구축을 통한 보상조회서비스 제공	19
Ⅲ-2-다. 소음 저감 활동 및 노력을 통한 소음원 관리	20
1) 군용항공기 및 군용비행장 소음저감활동 추진	20
2) 군사격장 및 운용 화기 소음저감활동 추진	24
3) 지휘관의 관심도 제고 및 주기적 교육 실시	27
4) 군별 ‘(가칭)소음저감활동 통합지침’ 마련	28
5) 각 군 소음관리 전담조직 정비·운영	29
Ⅲ-2-라.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30
1) 소음 발생 예상 훈련의 사전예고제 전면 시행	30
2) 소음민원 상담 및 접수 창구 설치 운영	31
3)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32
4) 민·군 화합행사 및 대민지원활동 주기적 실시	33

I. 기본계획 수립 개요

1. 법적근거
2. 계획의 성격
3. 계획의 범위
4. 계획의 주요내용
5. 추진경위

1. 법적근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2. 계획의 성격

- 「군소음보상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
 - 「군소음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
-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계획
 -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향후 5개년(2021~2025)간의 중기계획으로 여러 대책이 망라된 종합계획 수립
- 향후 수립될 시행계획 등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 소음관련 정책의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매 연도마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 ~ 2025년(5개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중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2021년 하반기부터 순차 지정·고시 예정

4. 계획의 주요내용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 소음피해 보상 방안
- 채용조달 방안
- 기타 소음저감에 필요한 사항

5. 추진경위

- 2019.11.26. : 「군소음보상법」 제정 (2020.11.27. 시행)
- 2020.03.25.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
- * '20.6월 : 제1차 소음영향도 조사 착수(비행장 42개소, 사격장 61개소)
- 2020.11.00.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Ⅱ.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현황

1. 군용비행장 현황
2. 군사격장 현황

1. 군용비행장 현황

□ 작전기지(군용비행장) 총괄표

구 분	계	전술항공	지원항공	헬기전용	비고
개소수	48	15	11	22	

□ 전술항공작전기지

번호	구 분	위 치	번호	구 분	위 치	비고
1	K-2	대구광역시 동구	8	K-46	강원도 원주시	
2	K-3	경상북도 포항시	10	K-55	경기도 평택시	
3	K-4	경상남도 사천시	11	K-57	광주광역시 광산구	
4	K-6	경기도 평택시	12	K-58	경상북도 예천군	
5	K-8	전라북도 군산시	13	K-59	충청북도 청원군	
6	K-13	경기도 수원시	14	K-75	충청북도 충주시	
7	K-16	경기도 성남시	15	K-76	충청남도 서산시	
8	K-18	강원도 강릉시				

* K-1 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제외함

** K-6, K-8, K-55는 미군비행장임

□ 지원항공작전기지

번호	구 분	위 치	번호	구 분	위 치	비고
1	K-10	경상남도 진해시	7	G-404	강원도 양구군	
2	K-53	인천광역시 옹진군	8	G-407	강원도 양양군	
3	K-60	충청북도 청원군	9	G-505	충청남도 연기군	
4	G-113	경기도 고양시	10	G-510	경기도 이천시	
5	G-217	경기도 포천시	11	G-536	충청남도 논산시	
6	G-222	경기도 양주시				

□ 헬기전용작전기지

번호	구분	위치	번호	구분	위치	비고
1	G-15	전라남도 목포시	12	G-312	강원도 화천군	
2	G-103	인천광역시 부평구	13	G-313	강원도 화천군	
3	G-110	경기도 파주시	14	G-419	강원도 홍천군	
4	G-213	경기도 가평군	15	G-420	강원도 인제군	
5	G-231	경기도 포천시	16	G-501	경기도 용인시	
6	G-237	강원도 철원군	17	G-532	충청남도 연기군	
7	G-280	경기도 하남시	18	G-610	충청북도 음성군	
8	G-218	경기도 양주시	19	G-801	경상북도 영천시	
9	G-290	경기도 남양주시	20	G-107	경기도 김포시	
10	G-301	경기도 양평군	21	G-703	전라북도 전주시	
11	G-307	강원도 춘천시	22	N-234	경기도 평택시	

2. 군사격장 현황

□ 군사격장 총괄표

구분	계	대형화기	소형화기	비고
개소수	1,134	130	1,004	

□ 대형화기(20mm 이상 구경) 사격장

구분	계	항공기	포	전차	기타*	비고
개소수	130	9	49	3	69	

* 기타 : 대전차화기, 대공화기, 박격포 등 공용화기

□ 소형화기(20mm 미만 구경) 사격장

구분	계	공용화기	개인화기	영점			기타*	비고
				소계	실내	실외		
개소수	1,004	57	287	620	25	595	40	

* 기타 : 실내사격장으로 통폐합 추진 예정인 예비군사격장

Ⅲ.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기본계획

1.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소음 저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3. 소음피해 보상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1.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비 전	민과 군이 상생 발전하는 군사시설환경 조성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관리 환경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 소음원의 체계적 관리로 군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최소화 ◆ 민·군 우호관계 구축을 통한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 확보 	
추진 전략	전략과제	중점 추진과제
	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기준 마련 ② 주민 소음피해 보상업무 처리지침 제정 ③ 자동소음측정망 데이터 표준화 및 체계 마련 ④ 보상금 지급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소음의 실태 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② 소음 상시 관리를 위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③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및 관리 ④ 군소음포털 구축을 통한 보상조회서비스 제공
	소음 저감 활동 및 노력을 통한 소음원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군용항공기 및 군용비행장 소음저감활동 추진 ② 군사격장 및 운용 화기 소음저감활동 추진 ③ 지휘관 관심도 제고 및 주기적 교육 실시 ④ 군별 ‘(가칭)소음저감활동 통합지침’ 마련 ⑤ 각 군 소음관리 전담조직 정비·운영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음 발생 훈련 사전예고제 전면 시행 ② 소음민원 상담 및 접수 창구 설치 운영 ③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④ 민·군 화합행사 및 대민지원활동 실시

2. 소음 저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가. 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1)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기준 마련 및 운용

□ 추진배경

- 「군소음보상법」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토록 규정(법 제5조)
- 이에,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조사 착수 전 관련 기준을 정비

□ 추진방향

- 정비 과정에서의 내실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행정예고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실시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측정 방법을 각각 ‘장’으로 구분하여 관련자 누구나 대상별 참조가 쉽도록 구성

□ 주요 추진내용 ※ 기 제정 완료('20.3.25)

-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및 기준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사절차, 측정지점 선정원칙, 측정 및 분석 방법 등 규정

- 조사절차의 중요 단계마다 지역주민 및 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투명성 확보
- 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조회 및 소음영향도 확정 전 검증 절차를 추가
- 소음영향도 조사 착수('20.6월) 전 신속하게 정비하여 현장 적용

2) 주민 소음피해 보상업무 처리지침 제정 및 지자체 배포

□ 추진배경

-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함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혼란 발생 불가피
- 이에, 한정된 기한 내에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를 제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배포

□ 추진방향

- 지침서는 소음대책지역 발표 전 제정·배포하여 보상업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침서 제정 후에는 지자체 대상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수나 오류가 없도록 대비

□ 주요 추진내용

- 주민 안내 시점부터 최종 보상금 지급 및 결산 등 마무리 시점까지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여 수록

* 보상절차 : 주민안내(1월말), 신청·접수(2월말), 검토·심의(5월), 지급 결정(5월말), 지급(8월말) 또는 이의신청(7월말), 심의·통지(9월), 이의신청(10월), 재심의·통지(11월말), 지급(12월)

- 보상금 산정 절차, 감액 조건 적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례 등을 제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구성
- 지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안, 보상금 산정 표준양식 작성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비하여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
- 업무처리 지침서는 '21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에 발간·배포될 수 있도록 추진

3) 자동소음측정망 데이터 표준화 및 운용 체계 마련

□ 추진배경

- 발생 소음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 자동소음측정망이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 이에, 각 부대별 소음측정망에서 추출될 데이터의 호환성과 통일성 부여 등을 위한 데이터 표준체계 마련이 필요

□ 추진방향

- 자동소음측정망 최초 설치 전까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사업 추진에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 요소가 없도록 대비
- 측정장비는 표준규격을 적용하여 향후 사업시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제조사가 상호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체계 개발사업은 사업구상에서 최종 완성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

□ 주요 추진내용

- (단기과제) 소음측정장비에 대한 표준화*된 통신규격과 장비 규격 등을 우선 개발하여 최초 사업('22년 이후) 시부터 현장 적용 추진

* 데이터 표준화 : 장비의 증설 또는 타 비행장·사격장 장비와의 소음정보 통합·연계 시 제조사가 상이하더라도 상호호환 가능

- (중장기과제) 군 소음의 통합 관제 및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소음감시센터* 설치를 검토

* 소음감시센터 : 전국 비행장·사격장의 소음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군소음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도화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개념 구상안)

4) 보상금 지급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추진

□ 추진배경

-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전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산정 지급됨
- 보상대상 주민 수가 다수이고 보상금 산정방식 등이 복잡함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용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 추진방향

- 별도의 신규 체계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지자체 운용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우선 추진
- 시스템 개발 업무의 내실화 및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 지역정보개발 업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 지자체 지역정보개발 업무 통할(행정안전부), 지자체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주요 추진내용

- 시스템 개발 편의성과 예산 절감, 접근 편리성,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등 고려 지자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우선 추진

* 농업·산림·환경 등 22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행정업무 통합시스템

- 관련 기능에는 주민등록정보와 연계를 추진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관리와 보상금 접수 및 산정, 결산 등에 관한 사항도 고려
- 시스템 개발은 보상금 지급 시점(‘22년 하.)을 고려하여 ’22년도 1/4분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사업 지연 시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 전까지 임시 사용이 가능한 간이프로그램(엑셀 등)도 준비하여 관련 업무를 대비

나. 소음의 실태 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1)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추진배경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2·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토록 규정(제5조제1항)
- 또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지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함(제5조제2항)

* 소음영향도는 5년마다 재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의 타당성을 검토

□ 추진방향

- 조사 대상지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규모도 상당함에 따라 예산과 업계 사정 등 감안시 일괄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현황(1,182개소) : 군용비행장(48개소), 군사격장(1,134개소 / 대형 130, 소형 1,004)

- 이에, 상대적으로 소음 발생이 크고 피해 정도가 심한 군용비행장과 대형화기 사격장을 우선 순위로 추진
- 후순위로, 소형화기 사격장 중 민원발생이 많은 사격장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단계별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완료

* 소형화기 사격장 중 실내사격장, 민통선 이북 소재 사격장 등 조사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주민 의견조회 및 심의 등을 거쳐 조사 제외

<단계별 추진계획(안)>

구 분	조사기간	개소수	조사 대상범위
1단계	'20년~'22년	120여개	· 군용비행장 전체(42개소, 비주둔 6개 제외) · 대형화기 사격장 80여개소(항공기·전차·포 등)
2단계	'22년~'23년	70여개	· 잔여 대형화기 사격장(50여개소, 공용화기) · 소형화기 사격장 10~30여개소(우선순위 고려 샘플링)
3단계*	'24년 이후	잔여	· 잔여 소형화기 사격장(980여개소)
<재조사> 1~3단계	25년~30년	전체	· 단계별 재조사 실시(5년 주기)

* 비고 : 3단계는 2단계의 '소형화기 샘플링 조사(10~30개소)'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판단

□ 주요 추진내용

- 소음영향도 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소음 측정 및 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
- 공인된 조사업체가 측정·분석한 결과물은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를 통한 검증 절차를 추가로 진행
- 또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중요 단계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도 함께 확보
- 소음대책지역은 법령에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

구 분		소음영향도		
		① 제1종	② 제2종	③ 제3종
군용비행장	대도시지역	95 이상(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85이상 90미만(웨클)
	기타지역			80이상 90미만(웨클)
군사격장	대형화기	94 이상(dB(C))	90이상 94미만(dB(C))	84이상 90미만(dB(C))
	소형화기	82 이상(dB(A))	77이상 82미만(dB(A))	69이상 77미만(d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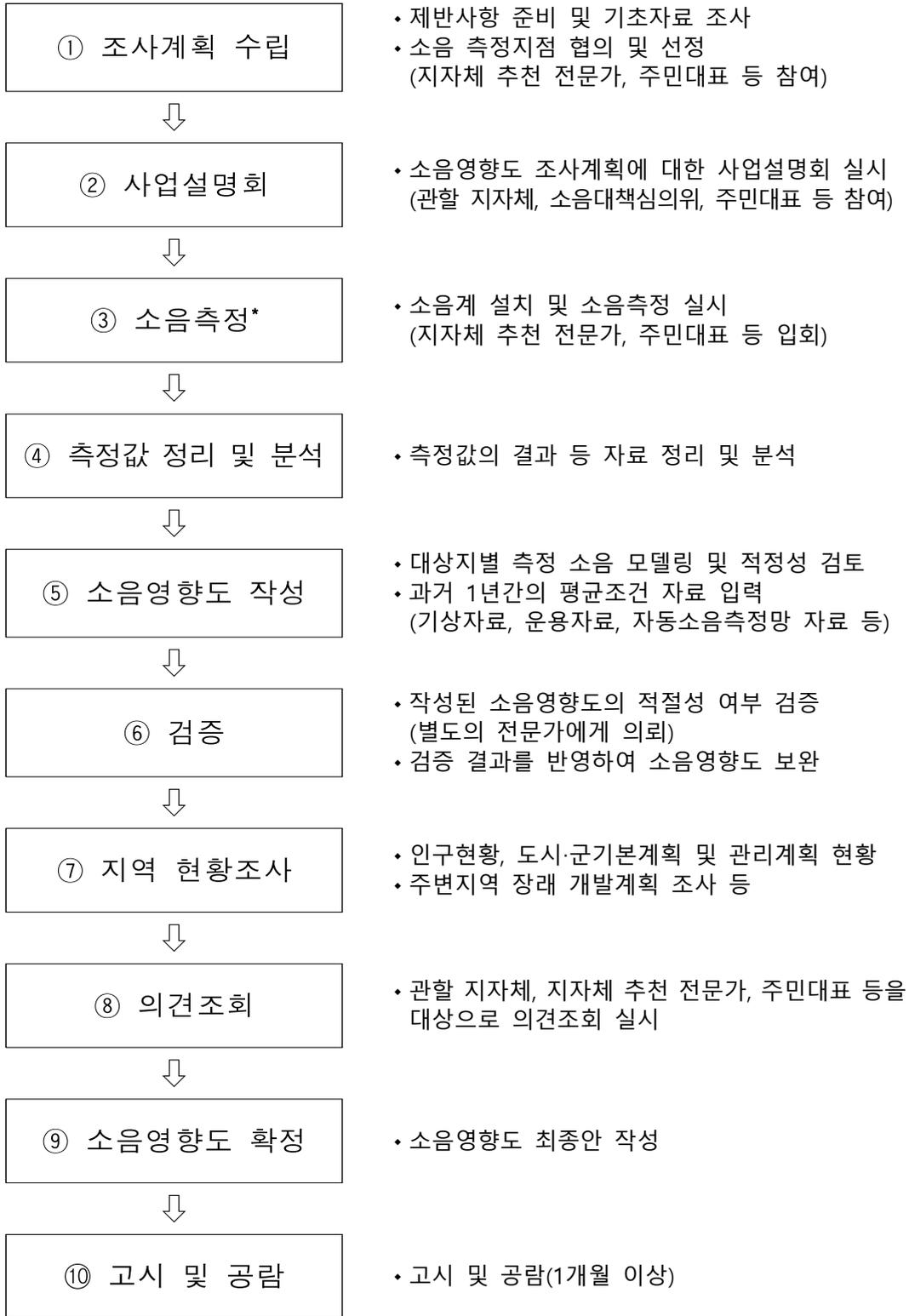
* <군용비행장> 대도시지역 : 대구, 수원, 광주 + α
기타지역 : 강릉, 원주, 예천, 청주, 충주, 서산, 평택, 군산, 오산, 조치원(세종) + α

- 2022년 최초 보상을 목표로 현재 제1차 소음영향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1년 말 103개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발표

< 제1차 소음영향도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2020.6월 ~ 2021.12월
- 조사대상 : 103개소 < 비행장 42개소, 사격장 61개소 >
 - 금번 조사에서 제외된 비행장 6개소는 비주둔 상태임(K-53, G-222/237/312/313/532)
 - 사격장 61개소는 대형화기로 항공기 사격 9개소, 전차·포 사격 52개소임

<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흐름도 >



* ③ 소음측정에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전체 과업수행에는 약 18~24개월 소요

2) 소음의 상시적 관리를 위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 추진배경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토록 규정 (법 제8조)
- 소음영향도 조사는 법령에 따라 5년을 기본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그간의 소음 변화 추이를 상시 관찰하고 소음저감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소음영향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설치 대상지가 광범위함에 따라 연차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설치 추진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이후에도 특정 제조사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표준화된 통신규격* 등을 마련하여 사업 진행

* 제조사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향후 통합과 확장 용이

□ 주요 추진내용

- 1차년도에는 표준화된 통신규격 등을 적용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차년도부터 순차 추진
- 설치 대상지 및 수량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 추이 및 대상지별 소음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

* 연차별로 비행장과 사격장을 적절히 안배하고, 기 설치된 환경부·국토부 등의 자동소음측정망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단계별 추진계획(안)>

구분 \ 연도	계	'22년 (1차)	'23년 (2차)	'24년 (3차)	'25년 (4차)	'26년~ (5차)
대상지	172개소 ¹⁾	2개소	44개소	44개소	44개소	38개소

- * 비교 : 1) 비행장 42개소, 대형화기 사격장 130개소(항공 9개소 포함)를 기준으로 함
 2)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와 기존 장비 활용 등이 고려되지 않은 계획(안) 임
 3) 소형화기 사격장에 대해서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시기 판단

3)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및 관리

□ 추진배경

-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토록 규정(법 제6조)
-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함

□ 추진방향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사무는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인허가 업무를 통해 관리
- 다만, 재개발, 재건축 및 아파트 신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관할 부대장 등)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 규제사항은 최소한으로 실시

□ 주요 추진내용 * 법 시행령·시행규칙 발효일('20.11.00)부터 시행

- 기본적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사항을 두지 않음
- 소음대책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 규제는 '주거용 시설', '교육·의료시설', '공공시설' 용도에 한정하여 실시
 - 제1종 지역 '신축'은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허가, '증·개축'은 미규제
 - 제2종 및 제3종 지역은 시설물 용도와 상관없이 미규제
- 방음시설 설치조건(외기에 접한 창과 출입문에 한함)
 - 창의 경우 '복층창 16mm(공기층) + 복층창 16mm(공기층)' 이상
 - 출입문의 경우 '강철제 문 60mm' 이상
 - 기타 상기 조건과 동등 이상의 차음성능을 갖춘 것

<시설물 설치제한>

* 법 시행규칙 [별표]

구 분 대상시설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용 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없음	제한없음
교육 및 의료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없음	제한없음
공공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없음	제한없음

4) 군소음포털 구축을 통한 보상조회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군 소음 관련 법안이 '97년 최초 의원 발의 이후 23여년만에 제정됨에 따라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현재, 군 소음 관련 정보는 자자체를 통해 간접 전달되거나 민원인 유선 문의를 통해 전달되는 체계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 추진방향

- 주민보상 시점('22년)을 고려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방부 포털 등에 보상 관련 조회서비스 기능을 우선 구축
- 중장기과제로 대국민용 군소음포털 개발을 검토하여 소음 관련 정책 안내와 대상지별 소음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

* 자동소음측정망 및 소음감시센터 설치 추진상황과 연계 검토

□ 주요 추진내용

- (단기과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21.말)와 동시에 국방부 인터넷망 포털 등에 보상조회 코너를 개설하여 주민 개개인이 보상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 포털 검색창에 본인 주거지의 '주소(지번)' 입력을 통해 '보상대상여부' 확인

- (중장기과제)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 별도의 대국민 서비스용 포털 개발을 통해 소음 관련 각종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전국 대상지별 소음지도 확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 발생 현황 조회, 소음 저감 관련 각종 정책 안내 등(개념 구상안)

다. 소음 저감 활동 및 노력을 통한 소음원 관리

1) 군용항공기 및 군용비행장 소음저감활동 추진

□ 추진배경

-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법 제11조)
- 또한, 군용항공기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음(법 제12조제1항)

□ 추진방향

- 이·착륙 절차개선 노력 및 야간비행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군 작전·훈련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
- 비행 관련 사항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

* 군용비행장 이전 또는 통폐합 추진, 방음시설 설치 등

□ 주요 추진내용

① 공중 소음 저감 활동 분야

- 이·착륙 절차 개선 추진 노력
 - 인구밀집지역을 고려한 이·착륙 및 장주비행 경로 설정
 - 이·착륙 및 장주비행 경로 매년 재검토 실시
 - 장주비행 고도 상향 조정(단, 기지별 환경 등 고려 관할 지휘관이 판단)
 - 이륙 전 엔진 최대치 출력(After Burner) 점검 가급적 생략(안전고려 판단)

- 이륙 상승각 조정으로 소음 영향 범위 최소화(상황별 지휘관이 판단)
- 저고도(1,000FT 이하) 및 고속(400KTS 이상) 전술 출항 훈련 가급적 지양
- 출항 시 이륙 간격 가능한 최대한 분산 실시
- 편대 이·착륙 비행 가능한 한 지양

○ 일반(시험)/야간 비행훈련 관련

- 소음 통제 시간 설정 및 운영(기지/부대별 상황 고려)
- 시험비행 임무시 초음속 비행절차 및 규정 준수
-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활성화로 실전 비행 저감 도모
- 항법도 상 인구밀집지역 등 소음 회피지역 표시 운용
- 인구밀집지역 상공 최저 비행 고도 설정 운용
- 심야시간(22시 이후) 비행 자제 및 장주비행 최소화
- 기본비행술 외의 훈련은 가급적 전술훈련장 위주로 실시
- 야간비행 시 사전예고 실시

○ 공대지/공대공 비행훈련 관련

- 저고도 항법 경로상의 인구밀집지역 분리 기준 준수
- 특정 사격장(웅천·황죽도, 미여도 등) 하계 성수기 저고도 임무 제한
- 음속돌파 비행 훈련 시 구역별 최저 고도 엄수

② 지상 소음 저감 활동 분야

○ 엔진 점검 등 정비 관련

- 주말 및 공휴일 정비·점검은 원칙적으로 금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 엔진 점검 시 방음/방호시설 필수 이용(불가피한 경우 제외)
- 야외 정비 불가피 시 가급적 일과시간대로 제한 운영
- 항공기 엔진 시동 후 불필요한 대기시간 최소화

○ 기지 내 제자리 비행 관련

- 방음벽이 설치된 장소 위주로 실시(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 지상 소음 영향 최소화 고도에서 운용(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 다수의 군용항공기 동시 시동 및 훈련 지양

○ 비행장 내 조류퇴치 활동 관련

- 로켓형 폭음통, LPG 폭음기는 주간비행 시에만 적용
- 야간은 차량 사이렌/경적 활용, 엽총은 불가피 시에만 적용
- 주말 및 공휴일 원칙적으로 금지(비행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③ 소음저감시설 사업 분야

○ 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추진

- 비행장 정비고, 활주로 등 주변의 소음 취약 및 민원다발지역 등 고려 방음시설 순차, 지속 설치 추진

<방음벽 설치 추진계획(안)>

구분 \ 연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개소수	33개소*	8개소	9개소	8개소	6개소	9개소

* 중기계획(안)이며 실제사업은 주변여건이나 예산반영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음정비고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 추진

- 비행장 내 방음·방호시설 등 설치로 정비·점검시 발생 소음 저감 도모(시설 미설치 기지 순차 추진)

<방음/방호시설 설치 추진계획(안)>

구분 \ 연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개소수	31개소*	6개소	7개소	6개소	7개소	5개소

* 중기계획(안)이며 실제사업은 주변여건이나 예산반영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군용비행장 이전 및 통·폐합 분야

○ 군용비행장 이전 추진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요구*에 의해 이전사업을 추진

* 지자체가 신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

- 적용대상은 16개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이며 현재 대구, 수원, 광주의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 전주비행장(G-703)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 완료('19년, 전주시와 기부 대 양여 방식)

○ 군용비행장 통·폐합 추진

- 연기비행장(G-532)을 조치원비행장(G-505)으로 통폐합 추진 (세종시와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 '23년 완료 목표)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 전력 재배치,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과 연계하여 통폐합 대상 시설 지속 발굴 검토

5 기타 분야

○ 사유지 매입 추진

- 비행안전구역(1구역) 내 사유지 매입 추진 검토(포항)

-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주민 안전, 군 전력 재배치 등과 연계하여 사유지 등 매입, 교환도 지속 검토

2) 군사격장 및 운용 화기 소음저감활동 추진

□ 추진배경

- 사격으로 인한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소음 저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야간사격에 대해서는 군 작전이나 훈련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고 반드시 사전예고를 하도록 조치
- 기타 소음저감 시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훈련장 과학화 및 통폐합 추진, 방음시설 설치, 화기 소음기 운용 등

□ 주요 추진내용

① 주야간 사격훈련 분야

○ 사격훈련 일반 관련

- 원칙적으로 06:00 이후 시작, 22:00 이전 종료(불가피한 경우 제외)
- 봄, 가을철 등 관광객 집중기간 사격훈련 제한적 운용
- 포병, 전차, 박격포 등 팀(반)단위 훈련시 측사 탄 활용 활성화
- 기갑 및 기계화부대 등의 주말, 공휴일 이동 최소화
- 소음 유발 기동장비 마을 통과 시 수송차량 최대한 이용

○ 야간사격 훈련 관련

- 야간사격 시 훈련시간 제한(22:00 이전 완료,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몰 후 사격시간 총량제 도입(부대별 상황에 맞게 설정·운영)
- 야간 또는 일몰 후 사격시 소음기 활용 검토(개인화기, 부대별 상황 고려)

○ 공대지/지대공 사격훈련 관련

- 내륙사격장 저각도 기관총 사격 가급적 지양
- 야간사격 시 저고도 임무 및 훈련시간 제한
- 발칸 사격용 표적기 엔진 소음저감장치 장착
- 패트리엇 발사대 지역 방음벽 설치
- 연간 사격장 사용일수 제한 검토

② 소음저감시설 사업 분야

○ 사격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추진

- 사격장 주변의 소음 취약 및 민원다발지역 등 고려 방음시설 순차, 지속 설치 추진

<방음벽 설치 추진계획(안)>

구분 \ 연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개소수	44개소*	18개소	7개소	1개소	15개소	3개소

* 중기계획(안)이며 실제사업은 주변여건이나 예산반영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피탄지 등 주변 방호시설 설치 추진

- 포병, 전차 피탄지 소음 감소를 위한 피탄지 보강사업 등을 연차별로 지속 추진

<방호벽 보강공사 설치 추진계획(안)>

구분 \ 연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개소수	20개소*	4개소	6개소	2개소	6개소	2개소

* 중기계획(안)이며 실제사업은 주변여건이나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탄약 및 교보재 등 개발 추진

- 포병 연습탄 개발, 소화기 소음기 확대 보급 등 소음저감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탄약/교보재 등 개발 지속 추진

③ 사격장 통·폐합 추진 분야

○ 군 훈련장 과학화 추진(중장기 구상)

- 사단 단위의 훈련장 권역화를 통해 불필요한 훈련장 통·폐합 추진
- 개인화기 사격장 지역단위 통합(town화) 운영 추진
- 실내사격장으로 대체되는 야외사격장 폐쇄 추진
- 영점사격장 사단별 통합(3~5개소) 운영 추진

○ 실내사격장 설치 추진

- 사격장 소음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 실내 사격장 설치 지속 추진

<실내사격장 설치 추진계획(안)>

구분 \ 연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개소수	1개소*	1개소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중기계획(안)이며 실제사업은 주변여건이나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군훈련장 통폐합 추진

- 지역예비군훈련장 사격장을 여단 단위 과학화예비군훈련장(40개소)으로 통합하고 실내사격장으로 설치를 추진

<예비군 실내사격장 설치 추진계획(안)>

구분 \ 연도	계	기설치/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개소수	40개소*	5/9개소	4개소	6개소	9개소	7개소	미정

* 중기계획(안)이며 실제사업은 주변여건이나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휘관의 관심도 제고 및 주기적 교육 실시

□ 추진배경

- 적절한 전력 유지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소음을 동반하는 각종 작전이나 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는 환경임
- 소음원의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하나 관할 지휘관의 관심도에 따라 일정 부분의 소음저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추진방향

- 지휘관의 노력이나 인식의 정도가 소음 민원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할 지휘관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 우수부대 선발 등 부대 또는 지휘관 평가시 세부항목에 소음 관리 분야를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 다만, 인위적인 훈련 축소 등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과도한 제재 방안 마련은 지양

□ 주요 추진내용

- 본부 또는 군단급 차원의 지휘 활동시 주기적 점검 및 관리
 - 소음저감 활동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관심 당부
 - 부대별 민원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결과 정례적 보고
 - 민원 발생 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 등 상호 공유
 - 부대 또는 지휘관 평가요소에 소음관리분야 반영
- 관할 지휘관은 부대원 대상 주기적 교육 및 강조 실시
 - 월 또는 분기 단위 교육 실시 및 관련 사항 기록 보유
 - 민원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 대책 등 공유
- 각 군 본부 차원의 각 부대별 소음민원 발생 현황 지속 관리
 - 예하부대는 소음민원 발생 현황을 각 군 본부에 분기별로 보고
 - 증감 현황, 유형별 분류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
- 기타 각 군 실정에 맞는 제고 방안 마련 시행

4) 군별 ‘(가칭)소음저감활동 통합지침’ 마련

□ 추진배경

- 그간 각 군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의 저감을 위한 각종 활동 및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다만, 명문화된 규정에 의하기보다는 당해 지휘관의 지시나 관심도 등에 따라 운용되는 사례가 많아 일관된 정책으로 정립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추진방향

- 소음저감을 위한 각종 방침이나 활동들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정비하여 소음저감 정책의 일부분으로 확립
 - * (주요내용) 이착륙 절차 규정, 주거지 등 비행시 제한사항, 훈련시기·시간 고려사항, 야간훈련·사격 준수/제한사항, 훈련 사전예고 등
- 명문화된 규정으로 인한 훈련 지장 초래 및 전력 약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각 군 실정에 맞는 소음저감활동을 우선 발굴 및 시범 적용하는 검증단계를 거쳐 최종 지침화 추진

□ 주요 추진내용

- (1단계 : ‘21~’22) 군별 무기체계와 사용화기, 훈련방식, 훈련 형태 등을 고려한 각 군 실정에 맞는 소음저감활동 지속 발굴
- (2단계 : ’22~’23) 발굴된 소음저감활동을 다양하게 시범 적용하고 그 효과 등에 대해 자체 분석* 실시
 - * 민원발생 증감 추이, 측정소음의 변화 추이, 체감 소음도 등 분석
- (3단계 : ‘24~’25) 소음을 유발하는 무기 및 장비 등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들을 모아 “(가칭)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저감활동 통합지침*(또는 훈령)”을 마련
 - * 훈련 및 전력적인 측면과 소음저감 효과(민원 감소) 등을 종합고려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정비, 소음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5) 각 군 소음관리 전담조직 정비·운영

□ 추진배경

- 과거 당연시되어오던 군 소음이 우리 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민원의 폭증과 소송 등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변모하였음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소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담 인력 부재 등으로 선제적 대응 보다는 상황 발생 시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해 왔음
 - * 각군 전담인력 현황: 공군(2명), 육·해군·해병대(0명), 군단이하(全無) - 부수적 업무로 겸임
- 군 소음 법안이 '19년 11월, 23여년만에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법정과제를 포함하여 각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행해야 할 신규 업무가 대폭 신설, 가중되었음

□ 추진방향

- 소음 관련 법정업무와 정책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각 군에 소음업무 전담인력 편제를 추진
- 군별 편제 규모 및 형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각 군과 국방부 조직 관련 부서에서 업무분석 후 협의·조정 등을 통해 결정
 - * 각 군별(해병대 포함)로 운용중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편제

□ 주요 추진내용

- (1단계 : '21~'22) 시행 초기, 사업 추진 전담인력 우선 편제
 - 1차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운용(103개소, '20~'21)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매년), 2차 소음영향도 조사(20개소, '21~'22)
- (2단계 : '22~'23) 법정·정책업무 상시 수행 전담인력 편제
 - n차 소음영향도 조사 및 대책지역 지정·운용(70여개소+a, '22~계속)
 - 자동소음측정망 단계별 설치·관리(172지역+a, '22~'26) 및 소음 관리('22~계속)
 - 각종 소음저감정책 수립 및 시행, 관리('22~계속), 민원 대응·관리(계속)
 - *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발표는 5년 주기로 반복 시행

라.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1) 소음 발생 예상 훈련의 사전예고제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상 각 군의 전력 유지 및 활동은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소음 발생도 불가피한 실정임
- 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지역주민이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현실적 대안임

□ 추진방향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소음 유발 훈련일정을 사전에 공지해 줄 수 있는 체계 마련
- 각 군의 훈련일정은 관할 부대별로 제공하되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 주요 추진내용

- 전국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대상 ‘소음 유발 훈련의 사전 예고제’를 전면 시행
- 관할 부대장은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훈련일정**을 주기적으로 공지 및 전파
 - 관할 지자체와 사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연락체계 구축
 - 일정 정보는 1주일 또는 한달 단위 등 주기적 제공(훈련 있는 경우限)
 - 야간 및 대규모 훈련은 반복 공지(지역방송국, 현수막 등도 활용)
 - 긴급 또는 누락 사항 등은 수시 공지
 - 각 군 본부 등에 통지 및 군별 홈페이지 게재(보안 고려 판단)

*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단체 문자발송, 반상회보 등에 정보제공 등

**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훈련에 한함

- ‘21년도에는 제반사항 준비 및 시범운영 등을 실시하고, ’22년부터 각 군 전면 시행 추진

2) 소음민원 상담 및 접수 창구 설치 운영

□ 추진배경

-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크나 해당 부대 출입제한 및 연락처 미공지 등으로 직접적인 민원제기는 어려운 상황임
- 군 홈페이지 등에도 각 군 본부 차원의 대표연락처만 안내되어 있어 피해주민들의 목소리가 해당 부대에 신속하게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추진방향

- 소음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별로 지역주민이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 소음발생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설명 및 응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본부와 국방부 등으로 전달하는 역할 수행

□ 추진 주요내용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부대 단위의 소음민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민원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지역주민 누구나 발생 소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에서는 관련 소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
 - * 대민 접촉 및 협의체,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실시
- 해당 부대의 위치와 민원창구 연락처는 관할 지자체 등에도 공유하여 필요시 주민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 '21년 제반사항 준비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22년도부터 전면 실시

3)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추진배경

- 소음을 포함한 예하부대 단위의 각종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관할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 필요
- 주요 작전이나 훈련 등에 따른 사전 설명, 다발 민원 또는 현안 등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지역 현안 등을 공유

□ 추진방향

-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접촉점을 유지하고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지역 단위로 구성하여 운영
 - *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유대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민감한 사안이나 중대한 현안 등은 별도 또는 상급 기구 등에서 논의
-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공무원은 필수 참여토록 하되 주민은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토록 유도

□ 주요 추진내용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부대 단위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대 실정에 맞게 주기적으로 운용
- 협의체를 통해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관련 정보 상호 공유
 - 소음영향조 조사, 소음측정, 주민보상 등 협조·논의
 - 소음 저감을 위한 활동 및 노력 등 홍보, 공유
 - 주요 작전이나 훈련 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안내
 -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상호 해결방안 논의
 - 각종 대민지원활동, 행사 등에 관한 협조, 논의
 - 기타 일상적 업무의 소통 창구로 활용 등
- 제반사항 정비 등을 거쳐 ‘21년도 하반기부터 구성·운영
 - * 협의체가 기 구성된 부대는 재정비(필요시) 등을 통해 지속 운영

4) 민·군 화합행사 및 대민지원활동 주기적 실시

□ 추진배경

-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접촉이 필요
- 민과 군의 상호 교류를 통해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각종 대민접촉 활동을 활성화

□ 추진방향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추진
- 지원활동은 농작물 수확시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특정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계획

* 지자체 등 지원 요청시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추진 주요내용 * 매년 부대별 실정에 맞게 계획하여 추진

- 대민지원 분야
 - 농어촌 농번기 일손돕기, 재난 피해복구 지원 등
 - 재능 기부(의료, 이·미용 봉사 등), 자연정화, 방역활동 등
- 민·군 화합행사 분야
 - 부대 또는 기지 개방 및 지역주민 초청 견학, 군악대 공연 등
 - 지역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병영체험활동 등 지원
- 이익 창출 지원 분야
 - 지역 농산물 구매 및 직거래 장터 운영 정례화 등
 - 연말연시 위문품, 위문금, 불우이웃돕기 실시 등

3. 소음피해 보상 방안

1)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 소음대책지역의 구분

-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보상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법 제5조)

□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 소음영향도 평가단위

- 군용비행장 : 웨클(WECPNL)*
- 군사격장 : 엘(알)디엔(L_{Rdn})** / (소형화기) dB(A), (대형화기) dB(C)

* 웨클 :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소음 중 최고값을 각각 합하여 (에너지)평균한 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 엘(알)디엔 : 군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 전체를 (에너지)평균한 값에 충격성 소음 가중치와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소형화기 사격장은 dB(A), 대형화기 사격장은 dB(C)로 표현)

○ 구역별 지정기준

구 분		소음영향도		
		① 제1종	② 제2종	③ 제3종
군용비행장	대도시지역	95 이상(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85이상 90미만(웨클)
	기타지역			80이상 90미만(웨클)
군사격장	대형화기	94 이상(dB(C))	90이상 94미만(dB(C))	84이상 90미만(dB(C))
	소형화기	82 이상(dB(A))	77이상 82미만(dB(A))	69이상 77미만(dB(A))

○ 도시 구분기준(군용비행장)

- 대도시지역 : 대구, 수원, 광주
- 기타지역 : 강릉, 원주, 예천, 청주, 충주, 서산, 평택, 군산, 오산, 조치원(세종)
- 그 외 지역(판례가 없는 지역) : 평균 배경소음도를 측정하여 ‘대도시 지역’ 만큼 평균 배경소음이 크면 대도시지역, ‘기타 지역’ 만큼 평균 배경소음이 작으면 기타지역으로 구분

□ 소음대책지역 경계지 처리기준

○ 당해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됨

○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치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제3종 구역과 제외지역의 경계에 건축물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3종 구역으로 봄

○ 단, 해당 건축물이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 여부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

□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최초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

○ 다만, 군사시설 재배치, 전력의 보강 등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 도래 전이라도 재조사 등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가능

○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는 소음의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가 실시

2) 보상금 산정기준

□ 보상금 지급단가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보상금	월 6만원	월 4.5만원	월 3만원

* 비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구분 없이 지급단가는 동일

□ 보상금 산정기준

- (공통사항)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일수에 비례하여 보상
- (군용비행장) 소음에 상시 노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중 보상
- (군사격장) 월별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공휴일 등 고려)하여 보상

월 사격일수	0일	1일~7일	8일~14일	15일 이상
월 보상금	미지급	월 보상금의 1/3	월 보상금의 2/3	월 보상금

□ 보상금 감액기준

- (전입일에 따른 감액) '89.1.1. 이후 전입자는 30% 감액*, '11.1.1.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

* '89.1.1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감액 제외

** '11.1.1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30% 감액

*** 다음의 경우는 감액에서 제외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설치 이전부터 전입한 경우
-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근무지에 따른 감액) 소음대책지역 밖에 직장이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기준 100km 이내인 경우 30% 감액, 100km를 초과하는 경우 100% 감액

3) 보상금 지급 방안

□ 보상금 지급대상

-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의 전년도 1.1~12.31까지의 보상대상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상대상기간 중간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거주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함

□ 보상금 지급방식

- 대상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등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에 의하여 심사 등을 거쳐 지급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연도의 동일 기간에 신청 가능 (이 경우 지연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시,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 신청 가능

□ 보상금 지급절차

- (기본절차) 대상지역 통보(국방부) → 주민 안내/공지(지자체) → 보상금 신청(주민) → 보상금 심의 및 결정(지자체) → 수용 또는 불복(주민) → 지급(지자체, 수용시)
- (불복시) 이의신청(주민) → 심의·결정(지자체) → 불복시 재심의 신청(주민) → 재심의·결정(국방부) → 통보

<보상절차 및 보상금 지급기한>

절 차	신청 접수	지역심의위 심의/결정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심의/결정 결과 통보	재심의 접수	재심의 심의/결정 결과 통보
소요기간	수시 (1~2월)	수시 (1~5월)	60일 (6~7월)	30일 (8~9월)	30일 (9~10월)	30일 (10~11월)
신청기한	▲ 최초신청 (~2월말)		▲ 이의신청 (~7.31.)		▲ 재심의신청 (~10.15.)	
심의결과 통보기한		▲ 최초신청 결과통보 (~5.31.)		▲ 이의신청 결과통보 (결정일부터 7일 이내)		▲ 재심의 결과통보 (결정일부터 7일 이내)
보상금 지급기한			▲ 1차지급 (~8.31.)		▲ 2차지급 (~10.31.)	▲ 3차지급 (~12.31.)

4. 재원조달 방안

1) 비용추계의 전제

-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률(법, 시행령) 제정 시에 검토·제출된 비용추계서 자료를 활용

* 제1차 소음대책지역(103개소)은 '21년 말에 지정·고시 예정

- 비용추계 기간은 '20.6월부터 소음영향도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 5년간의 기간으로 설정
-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수는 비행장은 소송수행 간 작성된 '소음지도'를 활용(소음지도가 없는 곳은 평균치 적용)하고, 사격장은 '군사격장 비용추계 연구' 자료를 활용
- 소음피해 보상금은 '07~'18년까지 진행된 군소음 소송의 소송배상금 분석에 따라 주민 1인당 월평균 22,000원을 적용

2) 보상금 비용 추계

-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수

○ 추계결과 : 33만 5천명

(단위: 만명)

공군비행장 (전술항공기지)	육·해군비행장 (지원/헬기항공기지)	미군비행장	군사격장	합 계
대구, 수원, 강릉, 광주 등 공군 비행장	청원, 연기, 목포, 김포 등 육군/해군 비행장	군산, 오산, 평택 등 미군 비행장	여주, 양평, 김포, 포항 등 69개소 군사격장	-
25.9	0.2	2.4	5.0	33.5

* 비고 : 가정을 통한 추계치로 실제 주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음대책지역 피해보상금

○ 추계결과 : 연 884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주민 수(명)	-	-	-	335,000	335,000	335,000
월 지급 단가(원)	-	-	-	22,000	22,000	22,000
합 계	2,737	-	-	969	884	884

* 비교 : 2022년은 '20.11.27~'21.12.31까지 기간을 합산한 금액임

2) 사업비용 추계

□ 소음영향도 조사

○ 단계별 추진계획(안)

구 분	조사기간	개소수	조사 대상범위
1단계	'20년~'22년	120여개	· 군용비행장 전체(42개소, 비주둔 6개 제외) · 대형화기 사격장 80여개소(항공기·전차·포 등)
2단계	'22년~'23년	70여개	· 잔여 대형화기 사격장(50여개소, 공용화기) · 소형화기 사격장 10~30여개소(우선순위 고려 샘플링)
3단계*	'24년 이후	잔여	· 잔여 소형화기 사격장(980여개소)

* 비교 : 3단계는 2단계의 '소형화기 샘플링 조사(10~30개소)'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판단

○ 비용 추계결과 : 348억원

(단위 : 억원)

구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단계	267	218	47	2	-	-
2단계	81	-	-	39	42	-
3단계	미정	-	-	-	-	미정
계	348	218	47	41	42	미정

* 비교 : '20년 용역단가 기준 적용(비행장·항공사격장 341백만원, 사격장 129백만원)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 단계별 추진계획(안)

구분 \ 연도	계	'22년 (1차)	'23년 (2차)	'24년 (3차)	'25년 (4차)	'26년~ (5차)
대상지	172개소 ¹⁾	2개소	44개소	44개소	44개소	38개소

- * 비교 : 1) 172개소 : 비행장 42개소, 대형화기 사격장 130개소(항공 9개소 포함)를 기준으로 함
 2)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및 기존 장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추계(안)임
 3) 소형화기 사격장은 미포함됨(선행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추진시기 판단)

○ 비용 추계결과 : 485억원 + a

(단위 : 억원)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대상지 (구분)	비42,사121, 항사9	비1,사1	비17,사22, 항사5	비11,사29, 항사4	비13,사31	사38
(개소)	172	2	44	44	44	38
설치개수 (지점)	1,115	15	330	295	285	190
설치예산	446	6	132	118	114	76
운영비	38.5	-	0.3	6.9	12.8	18.5
합 계	484.5	6	132.3	124.9	126.8	94.5

- * 비교 : 1) 구분 : 비-비행장, 사-(일반)사격장, 항사-항공기사격장
 2) 개소당 설치개수 : 비행장·항공기사격장 10지점, 일반사격장 5지점 가정
 3) 지점당 설치예산은 측정기 비용(40백만원, 수신기·네트워크 등 미포함)만 계상함
 4) 소음감시센터(데이터 통합관리) 구축 비용은 중장기과제로 미포함

□ 기타 소음저감대책사업 추진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 비행장 방음정비고 및 피탄지 주변 방호시설 설치
- 군용비행장 이전 및 통폐합 추진
- 군 훈련장(사격장) 통폐합 및 실내사격장 설치
- 비행안전구역 내 사유지 매입 추진 등

3) 재원조달 방안

○ 총비용 추계결과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피해보상금	2,737	-	-	969	884	884
소음영향도	348	218	47	41	42	미정
자동소음측정망	263	-	-	6	132	125
소음저감사업	미정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합 계	3,286	218	47	996	1,037	988

○ 재원 조달방안

- 범정부 차원의 별도 재원 마련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군소음 보상법」 제13조에 따라 전액 국비로 편성
- 지자체 차원의 관할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재원은 지방비로 편성(법 제4조)

IV. 추진 로드맵

추진 로드맵

추진 과제	추진일정					비고
	'21	'22	'23	'24	'25	
1. 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1-1.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기준 마련	■					완료
1-2. 소음 보상업무 처리지침 제정	■					
1-3. 자동소음측정망 데이터 표준화 및 체계 마련	■	■				
1-4. 보상금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	■				
2. 소음의 실태 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2-1.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	■	■	■	■	단계별
2-2. 소음 상시관리를 위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	■	■	■	"
2-3.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및 관리		■	■	■	■	상시
2-4. 군소음포털 구축을 통한 보상 조회 서비스 제공	■					
3. 소음 저감 활동 및 노력을 통한 소음원 관리						
3-1. 군용항공기 및 군용비행장 소음저감활동 추진	■	■	■	■	■	상시
3-2. 군사격장 및 사용 화기 소음저감활동 추진	■	■	■	■	■	"
3-3. 지휘관 관심도 제고 및 주기적 교육 실시	■	■	■	■	■	"
3-4. 군별 '(가칭)소음저감활동 통합지침' 마련			■	■	■	
3-5. 각 군 소음관리 전담조직 정비 운영	■	■	■			
4.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4-1. 소음 발생 훈련 사전예고제 전면 시행	■	■	■	■	■	상시
4-2. 상설 소음민원 상담 및 접수 창구 설치	■	■	■	■	■	"
4-3.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	■	■	■	"
4-4. 민·군 화합행사 및 대민지원활동 실시	■	■	■	■	■	"